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10.



문화재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4
2. 감사대상기관	4
3. 감사중점	4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4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예산 집행 부적정 (기관주의·통보)	6
2. 관사 관리규정 및 CCTV 설치·운영 규정 정비 필요 (개선)	12
3. 비귀속 대상 문화재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통보)	14
4. 목재 선박 활용 방안 마련 필요 (통보)	16
5. 출장비 지급 부적정 [시정(환수)]	19
6. 기념품 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21
7.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소방계획 미수립 (개선)	23

8. 공사 준공시 보험료 정산 미실시 [시정(환수)]	24
9. 설계 용역손해배상보험 미가입 (기관주의)	25
10.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한 문화행정서비스 제공 (모범사례)	2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문화재 발굴 및 과학적 보존과 분석,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전통선박 복원 연구·활용, 해양유물전시관 운영 등 해양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굴·연구하는 기관으로,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6. 10. 10.부터 10. 21.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수중문화재 조사 및 출수유물 보존 분석 연구 추진의 적정성, 전시실 운영 및 유물 관리 실태, 수중문화재 조사선박 운영·관리 실태, 조선통신사선 복원 및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등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9.7.8.부터 7.19.까지 10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7.1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별첨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통보

제 목 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가. 시설장비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부적정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 및 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제2항에 따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예산안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예산안 지침에 따라 다음의 세부사업별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표 1] 2019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 (B-A)	(B-A)/A
					(B-A)/A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2,986	5,362	8,248	2,886	53.8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792	898	865	△33	△3.7

연구소는 세부사업인 '1)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와 '2)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의 사업 목적(각주 참조)은 달리고 있음에도,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표 2]와 같이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사업성격인 사무공간 통신공사, 직원용 관사 보수 및 본관 승강기 유지보수 등에 10,543천원을 집행하였다.

- 1) 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로 유물의 복원과 전시자료 활용 및 지속가능한 수중문화재 인양·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

[표 2] 세부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현황

연도	세부사업	건명	보수기간	금액(원)
2017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수중발굴과 사무공간 조성 통신공사	'17.03.14.~25.	1,965,000
		서해문화재과 직원 관사(태안읍 SR타운) 블라인더 설치	'17.12.12.~18.	520,000
		서해문화재과 직원 관사(태안읍 SR타운) 벽지 교체	'17.12.11.~13.	1,410,000
2018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서해문화재과 직원 관사(로얄센텀빌) 벽지 교체	'18.5.18.~23.	1,298,000
		서해문화재과 직원 관사(대림아파트) 벽지 교체	'18.6.21.~7.4.	2,000,000
		서해문화재과 직원 관사(대림아파트) 부분 보수	'18.6.20.~29.	2,150,000
2019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2019년 본관 승강기 유지보수 (1~6월)	'19.1.1.~12.31	1,200,000
소 계		7건		10,543,000

[표 2]의 집행액 중 관사 보수와 관련된 5건에 대하여 연구소는 서해문화재과 신설(2017.6월)로 인하여 관사에 거주할 직원의 주거환경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연도별 집행액(2017년 1,930천원, 2018년 5,448천원)이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의 시설장비유지비 예산규모로 비해 소액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조직 신설에 따른 관사 보수의 필요성 또한 사전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연구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연구소는 예산안 지침에 따라 편성한 자산취득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자산취득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8,600	11,700	17,013	10,000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105,975	75,710	91,610	124,000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480,000	550,000	494,400	1,381,000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운영 및 관리	-	620,000	250,000	-
소 계	594,575	1,257,410	853,023	1,515,000

연구소는 세부사업인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의 사업 목적은 서로 달리고 있음에도,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와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430-01)에서 총 9회에 걸쳐 [표 4]와 같이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사업성격인 직원용 관사 물품 구입, 사무실 사무기기 등에 11,787천원을 집행하였다.

[표 4] 세부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연도	세부사업명	건 명	자금이체일자	이체금액 (단위: 원)
2016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관사 비치용 가구 세트 구입	2016-11-02	1,090,100
2017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관사 TV 구입	2016-11-30	539,000
		라인아파트 관사 냉방기 구입	2017-06-30	855,000
	수중문화재 발굴 및보존처리	기획운영과 문서자동제본기 구입	2017-12-15	3,124,000
		관사(현대산업아파트) 비치용 침대 세트 구입	2017-12-15	636,900
		관사 및 소장실 등 비치용 물품 구입	2017-12-19	3,417,000
2018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부속실 프린터 구입	2018-02-23	385,000
	수중문화재 발굴 및보존처리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2018-12-12	770,000
2019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김치냉장고(직원식당) 구입	2019-02-15	970,000
소계		9건		11,787,000

나. 피복비 집행 부적정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특히 피복비(210-03)의 집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구소는 아래 [표 5]과 같이 부서원 전체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2016.11월부터 2019.6월까지 7회에 걸쳐 피복비로 37,855천원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표 5]의 지급 인원은 대체적으로 방호, 위생, 청사관리 및 이외 특정한 업무환경 내에서 상시로 근무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는 근무자로 해석된다.

예산각목상 특정업무 종사자(발굴조사, 보존처리, 전시홍보 등)에 대한 피복비가 일부 부서에 편성되어 있으나, [표 5]의 피복 구매는 업무 종사자별 특성을 고려한 피복 구매가 아닌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피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한 점은 예산집행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피복비(210-03) 집행내역

연도	건명	지급인원	구입품목	예산액(천원)
2016	전시홍보과 부서원 피복 구매	15명	자켓, 바지	4,650
2017	신안선 특별전 단체 피복 구매	14명	상의	2,989
2018	전시홍보과 부서원 피복 구매	11명	상의	3,780
	해양유물연구과 부서원 피복 구매	15명	상의, 신발	9,456
	수중발굴과 워크숍 단체복 구매	28명	상의	1,372
	서해문화재과 부서원 피복 구매	18명	상의	6,120
2019	서해문화재과 부서원 피복 구매	22명	상의,바지,신발	9,488
소 계	7건			37,855

따라서 연구소는 피복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일회성 행사 또는 연중 상시적 착용이 아닌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단체 피복 구매를 지양하고, 일회성 사업이라도 사업취지 차원에서 기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행사인 경우에는 고가가 아닌 범위 내에서 기관홍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유형의 피복을 구매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및 기타운영비 집행지침은 [표 6]과 같다.

[표 6]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

현행			개정안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세목	내용	근거	예산 세목	내용	근거
포상금 (310-03)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금 등	2014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포상금 (310-03)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에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2018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일반수용비 (210-01)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 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2014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포상금 (310-03)	현상모집의 상금	2018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기타운영비 (210-1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014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기타운영비 (210-16)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018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연구소는 최근 3년간(2016~2018) 내부직원에 대하여 ‘자체 연말 업무추진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각 부서로부터 추천기한 내 대상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를 포상하였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인 연구소의 비전 달성 및 연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18년 동안 ‘기관장에게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및 ‘성과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업별 내역은 [표 7]과 같으며, 6개 사업에 기타운영비(210-16)로 10,240천원을 집행하였다.

[표 7] 기타운영비(210-16) 집행내역

연도	건명	금액(원)	비고
2016	2016년 자체 연말 업무추진유공자 포상금 지급	1,600,000	8명(1인당 20만원)
2017	기관장에게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490,000	10건(차등 지급)
	2017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 소장 표창 포상금	1,800,000	9명(1인당 20만원)
	2017년 성과포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포상금	2,850,000	9건(차등 지급)
2018	2018년 성과포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포상금 ³⁾	1,500,000	10건(차등 지급)
	2018년 연말 업무추진유공자 포상금	2,000,000	10명(1인당 20만원)
소 계	6건	10,240,000	

3) 2018년 성과포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포상금은 총3,500천원 (책임운영기관 포상금 2,000천원, 기타 운영비 1,500천원)

하지만 기타운영비(210-16) 적용범위에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연구소 사례를 타 기관⁴⁾과 비교할 때 위 6개 사업에 대한 포상은 포상금(310-03) 비목으로 집행함이 적절해 보인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1. 지침에 따라 편성한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피복비가 세부사업별 사업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2.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지침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문화재청 연말 업무추진유공자 포상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우수성과 포상은 포상금(310-03) 비목으로 집행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관사 관리규정 및 CCTV 설치·운영 규정 정비 필요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가. 관사 관리규정 개정 필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관리규정 제2조(관사 배정 및 운용)에 따른 관사현황과 2019년 7월 8일 기준 취득 및 임차한 관사현황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관사현황(제2조 관련)

구분	당 초 (관사 규정상 현황)	현 행 (‘19.7.8 기준)	비고
취득관사	8호	11호	
임차관사	-	6호	*'19년부터 임차
계	8호	17호	

관사 관리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22호(2017. 9. 5. 개정)] 개정 이후 2017년 12월 6일부터 2018년 4월 27일까지 취득한 태안군 소재 관사 3호와 2019년 2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임차한 목포시 소재 관사 6호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현행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CCTV 설치·운영 규정 재정비 필요

정부는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할 때 공공기관이 개인화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08.4월)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유물보호, 시설물 관리, 관람객 안전 등을 목적으로 총124대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연구소 CCTV 설치현황

(단위: 대)

구 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태안보존센터
전시실	34	4	-
기계실	-	3	-
수장고	5	7	-
옥내외	26	23	22
계	65	37	22

연구소가 본청에 보고('08.1월)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08년 당시 총28대 CCTV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에 태안보존센터 완공('11.7월), 제2전시실(신안선실) 개편('14.12월),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개관('17.6월) 등 시설 확대에 따라 CCTV는 점차로 추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연구소는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상세 현황(카메라 위치, 성능, 촬영범위 등)을 파악한 자료가 없으며, 본관 전시관 정문을 제외한 여타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안내판 설치도 부족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인 「CCTV설치·운영 규정⁵⁾」도 현행화 등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을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5) 공문(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694호, 2010.03.18.)의 첨부자료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09.4.27.)”이란 구절이 언급되어 있으나, 문서로 등록된 바 없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현재 미등록된 상태임.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비귀속 대상 문화재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문화재청 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가귀속 대상 문화재) 제6항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관·관리·활용·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매몰 자료로 결정한 문화재 이외의 유물(이하 "학술 문화재"라 한다)에 대하여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유물 관리규정」 제2조(적용대상)에 따르면 1. 국가귀속된 발굴, 발견신고, 압수 유물, 2. 구입, 수증 유물, 3. 국가귀속되지 않은 발굴 유물, 4.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소장 유물을 점검한 결과, 국가귀속 유물, 학술유물, 파편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귀속 유물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유물(학술문화재)로 분류된 유물들은 담당자가 세부현황에 대해 엑셀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표 10] 학술유물(학술문화재)로 분류된 유물

(2019.6.30. 기준 / 단위: 점)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임시보관유물 (발굴, 신고, 압수)	차용유물	합계
48,391	4	908	4,778	54,081

그러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하는 국가귀속 되지 않은 발굴 유물 중에서 2002~2003년 군산 비안도의 출수유물, 2003~2004년 군산 십이동파도 출수유물, 2006~2008년 군산 야미도 출수유물 등은 3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발견 당시 국가귀속 유물에 포함되지 않아 학술문화재 및 매물 유물 등의 구분 없이 파편으로 분류⁶⁾하여 유물상자에 담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박스 수량 및 세부 유물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유물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귀속 되지 않은 발굴 유물에 대한 세부 유물 현황 파악 및 보관·관리(매물 포함)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7.3. 직제개편으로 인해 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시홍보과에서 해양유물연구과로 바뀌었으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 유물 관리 규정」에는 아직까지 담당부서가 전시홍보과로 되어 있어 규정 현행화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국가귀속 되지 않은 발굴 유물에 대한 세부 유물 현황을 파악 및 보관·관리(매물 포함)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련 규정의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

6) 비귀속 대상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은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13.4.30. 개정되면서 문화재 선별회의를 통해 국가귀속 여부를 선정하고,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하 "비귀속 대상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목재 선박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1조(하부조직)에 따라 각 부서별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유물 연구과는 ‘고선박과 전통선박의 조사 연구·원형복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전통선박 조선기술 연구, 전시, 체험활동으로 활용하고자 [표 11]과 같이 해동호 및 부영호(이하 “목재 선박”)를 무상 기증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표 11] 목재 선박 현황

선박명	제작년도	규격	기증기관	기증시기	비고
206해동호	1996	44톤	○○○○시	2009.5월	감척대상어선
부영호	2001	9.77톤	□□군	2009.1월	감척대상어선

당초 목재 선박은 기증기관이 감척(폐업)어선 공공사업 활용 차원에서 수요를 희망하는 기관(연구소)에 인계한 것이며, 인수비용은 연구소가 부담하였으며 인계 조건에 활용이 종료되면 자체 해체처리토록 되어 있다.

또한 목재 선박은 인수 후 3년간은 해상 전시(‘09년~12년10월)를 하였으나, 이후 부영호 침몰(‘12.10.14) 사태가 발생하여 인양(‘12.10.21) 하였고, 육상 해변광장에 전시(‘12년10월~‘17년8월)되었으며, ‘17.8월 이후는 현재까지 대형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다. 그 동안 목재 선박 관리에 투입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표 12]와 같다.

[표 12] 목재 선박 관리 소요예산 내역

연월	건명	예산액 (천원)	비고
2009. 1월	부영호 선체 수리보수	7,700	
2009. 2월	부영호 선체 예인	400	목포 △△조선소→ 전시관
2009. 5월	206해동호 인도	5,420	부산 → 전시관
2009. 5월	206해동호 목선박 수리 및 정박용 닻 구입	4,677	
2010. 4월	206해동호 선체 수리보수	21,862	계약자(▽▽▽▽▽조선)
2011. 4월	해상전시 목선박 수리.보수	23,482	부영호 외 2척
2011. 9월	206해동호 수리보수	11,312	계약자(▲▲▲▲▲연구소)
2012.10월	부영호 인양 및 폐기물 처리	3,960	
2012.10월	부영호·해동호 육상 전시 실시	20,905	육상 인양
2012.12월	야외전시물 도장공사	19,400	해동호, 부영호 외 1척
2017. 8월	야외전시 선박 이동	21,000	해동호, 부영호 외 3척
계		140,118	

당초 목재 선박의 인수 목적은 전통선박 조선기술 연구, 전시, 체험활동으로 활용하는 데 있었으나, 이 시점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목재 선박의 현실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통선박 조선기술 연구 측면에서 목재 선박 2척 모두 제작연도가 1990년 후반, 2000년 초로 제작한지 30여년도 경과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인수 후 10여 년 동안 해상전시 및 육상전시에만 그치고 선박에 대한 조선기술 연구 실적이 많지 않다.

둘째, 목재 선박은 부영호 침몰(12.10.14) 이후는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시공간이 변경되었으나, 전시 및 체험을 위한 해상전시를 재추진하였다. 야외전시선박 해상 전시를 위한 데크시설 공사를 ◇◇시청과 협의(18.8월)하였으나, 공사구간이 ◇◇시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중복되어 공사계약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향후 목재 선박의 해상전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셋째, 현재 목재 선박은 전시홍보과가 추진하는 해변광장 정비 사업을 위해 현 대형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보관 중에 있다. 대형주차장(1,080㎡)은 연구소 전체 주차

공간(2,778m²)의 39%에 달하고, 단체 관람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공간임에도 현재는 거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목재 선박에 대한 도면화 작업 등을 통해 실측 복원기술을 우선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용사업 등에 관한 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지침 제18호, 2017.5.31. 제정)에 따라 관리·운용 타당성 검토와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목재 선박에 대한 관리·운용 타당성 검토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시 정 (환수)

제 목 출장비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따르면 공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무지의 출장시에도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 서해문화재과(이하 '서해과')에서는 2018.5.4.부터 2019.6.30.까지 태안 마도해역에 대한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자 총 47회의 근무지의 출장이 이루어졌으며, 총 19명에게 19,252,090원의 출장비가 지급되었다.

연구소는 공무원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해과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에서 마도조사해역까지의 이동 경로 및 방법에 대하여 전시관에서 신진항까지의 이동은 개인차량으로 약 2km 이동하였고, 신진항에서 마도해역까지는 고무보트로 약 4.5km 이동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동 경로가 왕복 12km가 넘는다고 판단하여 조사시마다 근무지의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연구소에서 2018.5.4.부터 2019.6.30.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마도 조사구역의 출장 경로를 확인한 결과, 마도 조사구역 중 2018.8.30.부터 2018.9.6.까지 실시한 A구역의 경우는 신진항에서 마도해역까지의 거리가 약 3.5km에 불과하여 총 이동거리가 왕복 11km에 불과하므로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또한 전시관에서 신진항까지 개인차량으로 약 2km 이동하고, 신진항에서 마도해역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공용선박인 고무보트로 이동하였기에 일비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도 육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일비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나, 감액 없이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총 4,670,000원이 과지급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출장비 지급시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지급하고, 과지급된 출장 여비 4,67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제 목 기념품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 중 일반운영비(210-01목)에 따르면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표 13]과 같이 총 71개 품목의 기념품을 구입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130,006,350원이며, 연구소에서 구입한 기념품의 주요 목적은 기관 홍보용, 전시 등 행사기념품용, 설문조사 응답자 증정용, 해양문화유산(섬)조사 주민(제보자) 기념품용 등이다.

[표 13] 기념품 구입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기관홍보용		행사기념품용		설문조사 응답		섬조사 기념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획운영과	1	90	2	3,250	1	270	-	-	4	3,610
수종발굴과	6	22,782	-	-	-	-	-	-	6	22,782
전시홍보과	6	22,800	17	20,612	10	5,491	-	-	33	42,015
해양유물연구과	-	-	19	38,214	-	-	4	8,830	23	29,265
서해문화재과	5	7,668	-	-	-	-	-	-	5	7,668
건수/금액	18	53,340	38	62,076	11	5,760	4	8,830	71	130,006

연구소는 기념품의 사용처 및 재고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수불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하나, 총 71개의 기념품목 중 8개 품목만 수불대장이 있고 나머지는 63개 품목은 수불대장 없이 기념품을 배포·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수증발굴과의 경우 2017.11~12월 수증문화유산 보호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머그컵 600개, 수건 500장, 볼펜 1,000개를 구입하였으나, 수불대장에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종류별로 각각 130개를 지급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념품 일부를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기념품 구입시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입하고, 구입한 기념품은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소방계획 미수립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방계획서를 수립(2019.1.7.)하면서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⁷⁾의 소방계획은 서해문화재과에서 별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서해문화재과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건물 사용허가⁸⁾(2018.10.23.)를 받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인 전시관 및 사무실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소방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소방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소방훈련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7)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직제에 따른 정식 명칭이 아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부르는 건물 명칭

8)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완공 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음

문 화 재 청

시 정 (환수)

제 목 공사 준공시 보험료 정산 미실시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제2항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7년 11월 계약 체결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본관) 천장텍스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준공 처리 하였다.

[표 14] 보험료 납부여부 미확인 공사

(단위: 원)

계약일자	건 명	준공일자	준공금액	보험료 미정산 금액	환수금액
2017-11-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본관) 천장텍스 설치 공사	2017-12-02	9,900,000	93,286	138,530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본관) 천장텍스 설치 공사의 미정산 된 보험료 138,53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제 목 설계 용역손해배상보험 미가입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아래 [표 15]와 같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계약 체결한 설계용역 10건에 대하여 용역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 발생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였다.

[표 15] 용역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현황

계약일자	건 명	계약금액 (단위: 천원)	납품일자	용역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2016-11-02	누리안호 캡스톤 추가설치 도면 설계	5,000	2016-11-11	미가입
2017-04-17	수중문화재 발굴바지선 건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5,000	2017-06-13	미가입
2017-07-05	신안선 실시설계용역	45,000	2017-12-01	미가입
2017-09-11	수장고 조습환경 조성 실시설계 용역	14,500	2017-09-30	미가입
2017-09-27	아외광장 조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8,000	2017-11-25	미가입
2018-02-08	누리안호 슬러지펌프이동설치 및 거주구역 일부개조 도면 설계	7,000	2018-02-26	미가입
2018-02-27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5,500	2018-04-27	미가입

2018-03-30	야외전시선박 해상전시대 실시설계	18,000	2018-05-31	미가입
2019-01-31	노후 수배전반 개선 실서설계 용역	5,500	2019-03-12	미가입
2019-03-21	기획전시실 공간 개편 실시설계	14,000	2019-04-19	미가입
소 계	10건	137,500		

연구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규정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을 참고하여 설계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방이 용역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설계 용역 발주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손해 배상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모 범 사 례

제 목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한 문화행정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해양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섬문화유산 조사에서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편집하여 영상다큐멘터리를 자체 제작하고 조사지역 현지 주민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와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조사보고서 헌정과 사진전 자료 기증으로 지역기관(면출장소)에서 섬문화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사진전 개최 관련 사진



해양문화유산 조사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양문화유산조사 방법 및 내용을 전달하고 현지 주민 조사원을 위촉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과 조사내용 검증에 노력하였으며, 현지 세미나(워크숍)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에게 연구 자료를 공유하였다.

[그림 2] 주민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조사원 위촉 사진

			
위도해양문화유산조사 현지 주민 설명회	고이도 현지주민 조사원 위촉	고이도 현지 해양문화유산조사 세미나	위도 해양문화유산 연구 협력기관 워크숍 개최

또한 섬문화유산 조사 영상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유튜브, 블로그 등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표 16] 유튜브 홍보 동영상 조회수

유튜브 동영상	안마도	만재도	반월도	여서도	옥도	수치도
조회수 (단위: 천 회)	100	6.8	6.3	5.6	5.2	4.7
유튜브 동영상	다물도	박지도	우이도	사치도	병풍도	재원도
조회수 (단위: 천 회)	3.9	3.3	30	1.4	1.1	10

[표 17] 업무협약 현황

순번	체결일	협약기관	MOU 목적	협업실적
1	2016.08.03 (연장체결)	목포대 도서관연구원	연구교류를 통한 연구역량강화 전문적 연구성과 질적 향상	국제학술대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어로민속도록 발간 등
2	2016.11.18	한국목간학회	해양문화유산연구의 활성화 전문연구성과 창출	수중발굴 목간학술대회 개최 등
3	2018.06.07	국립제주박물관	학술교류 협력 해양문화유산조사 연구의 역량강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등
4	2018.06.18	국립전주박물관	학술교류 협력 해양문화유산조사 연구의 역량강화	해양문화유산공동조사 등
5	2019.01.31 (연장체결)	신안군	해양문화유산조사의 효율적인 관리 보급과 학술행사, 전시협력	신안 섬 해양문화유산조사 바다·섬·사람 사진전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 개최 등
6	2019.03.26	부안군	해양문화유산조사연구의 효율적인 관 리 보급과 학술행사 협력	부안 위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등

연구소의 해양문화유산 조사 사진과 신안군 소장 관련 사진을 활용하여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바다·섬·사람 사진전’을 협업기관과 공동개최 하여 섬과 바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예산을 절감하였다.

[표 18] 사진전 개최 현황

구분	개최장소	기간	소요예산
1회차	국회의원 회관 제2로비 전시실	5.30~5.31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00천원 - 전라남도 신안군 60,000천원
2회차	대전 정부청사 지하 중앙홀	6.10~6.14	
3회차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층 전시실	7.22~7.26	
4회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특별전시실	8.06~8.18	

위와 같이 연구소는 ▲ 섬문화유산 조사 자료를 활용한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사진전 개최 ▲ 해양문화유산 조사 지역의 주민설명회 및 세미나(워크숍) 개최 ▲ 섬문화유산 조사 영상다큐멘터리 유튜브 등 홍보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진전 개최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 향유기회 향상에 이바지 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